# 인쇄하기

무방문, 무서류 간편 대출 가능

영업점

# 정책자금대출



가입대상

개인사업자&법인

## 상품안내

상품특징

생산성 향상 및 기술개발 촉진, 신성장동력산업 육성등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부, 지방

자치단체, 공공단체등이 조성한 자금을 금융기관이 차입하여 지원하는 대출

대출신청자격

- 융자추천기관에서 대출 대상자로 추천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

-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등록자(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)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

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.

대출금액

- 융자추천기관에서 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상환능력, 자금용도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

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

- 융자추천기관에서 정한 기간 이내

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

- 융자추천기관에서 정한 기간 이내

# 금리 및 이율

# 이용안내

# 유의사항 및 기타

적용이율 결정방법

<u>- 정책자금 대여기관에서 고시한 이율에 따라 적용되며, 확정금리 또는 고정금리의</u> 형태로 운용

본 공시내용의

유효기간

※ 확정금리 : 대여기관의 금리고시에 따라 확정되는 금리 ※ 고정금리 : 대여기관의 금리고시에 따라 고정되는 금리

# 이자계산 방법 - 원금에 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일 단위 계산대출은 이를 365(윤년인 경우 366)로, 월 단위 계산대 출은 12로 나누어 계산하고, 정책자금 대여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이자 부과시기 - 대출이자는 대출약정시 정한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에 따라 부과됩니다.[예시) 매월 (00)일에 지급 합니다 원리금상환 방법 - 일시상환방식 :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, 이자는 정책자금 대여기관에서 정한 약정납입일에 후취 - 분할상환방식 : 원금은 정책자금 대여기간에서 정한 약정납입일에 균등분할상환(1개월, 3개월, 6 개월 단위)하고, 이자는 정책자금 대여기관에서 정한 약정납입입에 후취 납부(1개월, 3개월, 6개월 단위) 원금 또는 이자 상환 - 대출기간 중 중도상환하는 경우 적용받는조건 관련 제한 ㅇ 정책자금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나, 정책자금 대여기관에서 별도로 중도상환수수료 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수수료 등 부대비용 -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,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%씩 부담합니다. ※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: 비과세 <u>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~1억원 이하 : 7만원 (고객부담 3만5천원)</u> 대출금액 1억원 초과~10억원 이하: 15만원 (고객부담 7만5천원) 대출금액 10억원 초과 : 35만원 (고객부담 17만5천원) - 담보취득비용 o [근저당권] 설정등기 하는 경우(등록면허세, 지방교육세, 등기신청수수료 및 <u>법무사수수료)는 은행 부담 / 감액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고객 부담 /</u> <u>국민주택채권매입비(설정금액의 10/1,000)는 고객 부담</u> <u>ㅇ [담보신탁]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은 은행이 부</u> 담 / 담보신탁 처분시 고객 부담 - 보증료 :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고객 부담 만기 경과후 기한의 -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는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제7조에 따 이익상실에 대한 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. 안내 -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, 연체기간에 따라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과 『신용정보 관 리규약」에 의거 신용도판단등록정보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담보 및 보증 제공 - 대출실행시 필요한 경우 담보(보증서포함) 제공 가능 여부 고객에게 발생할 - 해당 사항 없음 수있는 불이익

- 개시일: 2021.3.31

- 종료일: 2023.12.31

#### 기타 계약사항

- 계약사항은 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및 여신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르며, 추가약정이 필요한 계약사항의 경우 추가약정서 작성 또는 여신거래약정서내 특약사항 작성을 통해 계약함
- \* 영업점 상담 후,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거래조건 등이 결정됨

#### 판매종료여부

판매중

# 연체이자 (지연배상금)에 관한 사항

- 약정 납입일에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, 분할상환대출은 원리금 납입을 연속하여 2회이상 연체하는 경우, 일시상환 대출은 14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 부과됩니 다
- 연체이자율은 [이자율 + 연 3%] 로 적용합니다.
-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.0%로 합니다. 단, 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연체이자율은 이자율에 연 2.0%p를 더한 율을 적용합니다.

#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

1차 연체여신에 대한 지연배상금률 변경(변경 적용일: 2018. 4. 27)

가. 변경전후의 거래조건 비교

(변경전)

- 지연배상금률 적용방법은 대고객금리에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가산하여 적용하되, 최고 연체이자율은 연 15.0%로 한다. 다만, 대고객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지연배상금률은 대고객금리에 연 2.0%p를 더하여 적용합니다.
- "연체기간별 가산금리" 는 연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연 6.0%p,
-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연 7.0%p, 3개월 초과인 경우에는 연 8.0%p를 적용하며 연체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.

#### (변경후)

- 연체이자율은 [이자율 + 연 3%]로 적용합니다.
-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.0%로 합니다. 단, 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연체이자율은 이자율에 연 2.0%p를 더한 율을 적용합니다.
- 나. 기존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: 여

2차 적용이율 결정방법, 원리금 상환방법, 원금 또는 이자상환 관련 제한사항 및 수수료등 부대비용에 대한 내용 추가(변경적용일 : 2018.12.10)

- 가. 변경전 후의 거래조건 비교
- (1) 적용이율 결정방법

#### (변경전)

- 정책자금 대여기관에서 고시한 이율에 따라 적용되며, 확정금리의 형태로 운용
- ※ 확정금리 : 대여기관의 금리고시에 따라 확정되는 금리 (변경후)
- 정책자금 대여기관에서 고시한 이율에 따라 적용되며, 확정금리 또는 고정금리의
- ※ 확정금리: 대여기관의 금리고시에 따라 확정되는 금리
- ※ 고정금리 : 대여기관의 금리고시에 따라 고정되는 금리
- (2) 원리금 상환방법

#### (변경전)

- 일시상환방식 :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, 이자는 매1월 단위로 약정납입일에 후취
- 분할상환방식: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(매1개월, 2개월, 3개월 단위)에 균등분할상환하고, 이자는 원금상환방법과 동일한 월단위로 후취

#### (변경후)

- 일시상환방식 :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, 이자는 정책자금 대여기관에서 정한 약정납입일에 후취

- 분할상환방식 : 원금은 정책자금 대여기간에서 정한 약정납입일에 균등분할상환(1개월, 3개월, 6개월 단위)하고, 이자는 정책자금 대여기관에서 정한 약정납입입에 후취 납부(1개월, 3개월, 6개월 단위)
- (3) 원금 또는 이자상환 관련 제한사항 휴일상환 가능여부 (변경전)
- 별도 제한 없음

#### (변경후)

- 정책자금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나, 정책자금 대여기관에서 별도로
- 중도상환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
- (4) 수수료 등 부대비용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 등 명시

#### (변경전)

-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,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%씩 부담합니다.

#### (변경후)

-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,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%씩 부담합니다.

(추가) ※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: 비과세

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~1억원 이하: 7만원 (고객부담 3만5천원)

대출금액 1억원 초과~10억원 이하: 15만원 (고객부담 7만5천원)

대출금액 10억원 초과: 35만원 (고객부담 17만5천원)

- 담보취득비용
- o [근저당권] 설정등기 하는 경우(등록면허세, 지방교육세,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)는 은 행 부담 / 감액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고객 부담 / 국민주택채권매입비(설정금액의 10/1,000)는 고객 부담
- o [담보신탁]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은 은행이 부담 / 담보신탁 처분시 고객 부담
- 보증료 :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고객 부담
- 나. 기존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: 여
-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내용 변경(변경 적용일: 2021.3.31)
- 가. 변경전후의 거래조건 비교

#### (변경전)

- 이 상품의 상품개발 부서는 기업상품부이며,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대출취급시 적용되는 기간, 금리, 담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기업여신 담당자 또는, 스마트상담부 ☎1588-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본 설명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,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,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.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.

#### (변경후)

-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등록자(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)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.
-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,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, 개인신용평점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.
-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,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금리인하요구권 :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호전 또는 담보가 보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(회사채 등급상승, 재무상태 개선, 특허권 신규취득, 개인신용평점 상승, 담보제공 등)에는 증빙자 료와 함께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단, 은행의 신용평가 및 심사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- 청약의 철회 :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 수령일, 계약 체결일,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(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)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- 위법계약의 해지 :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(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)에 해지요구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이 상품의 상품개발 부서는 기업상품부이며,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, 대출취급시 적용되는 기간, 금리, 담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기업여신담당자 또는, 스마트상담부 ☎1588-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

자료이며,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,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.

나.기존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: 부

#### 만기 도래하는 경우 기한연장 방법

- 기한연장 불가

####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

-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등록자(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)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.
-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,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, 개인신용평점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.
-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,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금리인하요구권: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호전 또는 담보가 보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(회사채 등급상승, 재무상태 개선, 특허권 신규취득, 개인신용평점 상승, 담보제공 등)에는 증빙자 료와 함께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단, 은행의 신용평가 및 심사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- 청약의 철회 :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 수령일, 계약 체결일,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(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)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위법계약의 해지 :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(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)에 해지요구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이 상품의 상품개발 부서는 기업상품부이며,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, 대출취급시 적용되는 기간, 금리, 담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기업여신담당자 또는, 스마트상담부 ☎1588-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,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,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때문에 대출계 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 람이 가능합니다.

#### 준법감시인 심의필

-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-0671-102호(2021.3.31)